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 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092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09.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3.

www.nobrandbuger.com  
 & .co.kr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정보공개서

(주)신세계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 (주)신세계푸드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전화 : 02-3397-6000

팩스 : -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22-4588(개설상담 대표번호) / 02-3397-6866(개설담당 내선번호)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79.10.11	1995.07.01	강승협	02-3397-6000	-
	법인등록번호	110111-0305288	사업자등록번호	215-81-4737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강승협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성웅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원정훈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외이사/ 감사위원	전홍욱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외이사/ 감사위원	김영기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외이사/ 감사위원	한주훈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승협	02-3397-6000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8,9,10층(성수동2가, 백영성수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채양	02-380-5123	02-380-5779		
	법인등록번호	110111-0167498	사업자등록번호	212-81-2554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이마트24	emart24 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4층(성수동2가, 푸조비즈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일	02-6916-1500	02-6916-1468		
	법인등록번호	110111-3419515	사업자등록번호	105-86-9245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이마트	No Brand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채양	02-380-9192	02-380-5489		
	법인등록번호	110111-4594952	사업자등록번호	206-86-5091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상 호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5879550000(30류) 등록번호 : 4018053210000(35류) 등록번호 : 4015879560000(43류)
		등록번호 : 4016272180000(30류) 등록번호 : 4017558650000(35류) 등록번호 : 4016272190000(43류)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897,129,700	605,613,501	291,516,198	1,404,343,641	22,163,568	-5,946,048
2023	867,342,241	576,473,905	290,868,336	1,473,420,329	27,747,351	12,140,973
2024	827,853,903	528,226,034	299,627,868	1,521,349,514	22,961,513	14,027,720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승협	대표이사	2025.03.25~현재	(주)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경영총괄
	김성웅	사내이사	2024.03.26~현재	(주)신세계푸드 사내이사	관리총괄
	원정훈	사내이사	2025.03.25~현재	(주)신세계푸드 사내이사	영업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천홍욱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4.03.28~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
	김영기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4.03.26~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
	한주훈	사외이사/ 감사위원	2024.03.26~현재	(주)신세계푸드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3	3,39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가맹본부	(주)신세계푸드/ 강승협	가맹사업 경영	2016.12.22~현재	오슬로(o'slo)(등록번호:20160877)라 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2020.10.30~현재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등록번호:2019092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자진취소(2024.12)	노브랜드 피자(No Brand Pizza)(등록번호:2021208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스무디킹코리아(주)/ 강승협	가맹사업 경영	2003.02.05.~ 2025.10	스무디킹(SMOOTHIEKING)(등록번호:200810 006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2025.02. 자진취소/2025.10. 사업종료
	(주)이마트에브리데이 /한채양		2014.01.03~현재	이마트에브리데이(등록번호:20130094)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주)이마트24/ 최진일		2003.02.12~현재	emart24(등록번호:2008010072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주)이마트/ 한채양		2021.06.~현재	emart24 SMART(등록번호:2021143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2019.04.25~현재	No Brand(등록번호:2018132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9.05.09. 출원	출원 4020190072023(30류)	(주)이마트	2030.03.19.
		2020.03.19. 등록	등록 4015879550000(30류)		(2029.07.31.)
		2019.05.10. 출원	출원 4020190072642(35류)		2031.12.01.
		2021.12.01. 등록	등록 4018053210000(35류)		(2029.07.31.)
		2019.05.09. 출원	출원 4020190072025(43류)		2030.03.19.
		2020.03.19. 등록	등록 4015879560000(43류)		(2029.07.31.)
		2019.07.15. 출원	출원 4020190109331(30류)		2030.07.22.
		2020.07.22. 등록	등록 4016272180000(30류)		(2029.07.31.)
		2019.07.15. 출원	출원 4020190109332(35류)		2031.07.28.
		2021.07.28. 등록	등록 4017558650000(35류)		(2029.07.31.)
<b>NBB</b>		2019.07.15. 출원	출원 4020190109333(43류)		2030.07.22.
		2020.07.22. 등록	등록 4016272190000(43류)		(2029.07.31.)

○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인 (주)이마트로부터 상표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 현황

1.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을 시작한 날 : 2020년 10월 3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9년 8월 19일)

2.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김운아	2020.10.30~2021.03.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주)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송현석	2021.03.25.~2025.03.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주)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강승협	2025.03.25~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성수동2가, 백영 성수빌딩)

3.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업종

영업표지	업종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패스트푸드	버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증인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7	138	49	198	169	29	215	189	26
서울	49	17	32	40	21	19	41	24	17
부산	16	14	2	16	15	1	12	11	1
대구	15	13	2	12	12		11	11	
인천	14	12	2	12	11	1	13	12	1
광주				8	8		9	9	
대전	3	2	1	5	4	1	7	6	1
울산	3	3		2	2		2	2	
세종	1	1		2	2		2	2	
경기	58	48	10	55	48	7	59	53	6
강원				2	2		6	6	
충북	2	2		5	5		7	7	
충남	4	4		8	8		11	11	
전북				4	4		6	6	
전남				3	3		4	4	
경북	14	14		17	17		17	17	
경남	8	8		7	7		8	8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17	28	-	7	14	138
2023	138	43	-	12	7	169
2024	169	32	-	12	11	189

6.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신세계푸드	오슬로(o'slo)	20160877	아이스크림/ 빙수	6/1	6/1	5/1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20190929	패스트푸드	138/49	169/29	189/2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마트에브리데이/한채양	이마트에브리데이	20130094	기타도소매	25/232	23/230	23/219
		emart24	20080100729	편의점	6,176/53	6,348/53	5895/43
	(주)이마트24/최진일	이마트24 스마트(emart24 SMART)	20211432	편의점	135/0	192/1	190/1
		(주)이마트/한채양	No Brand	20181320	도소매	48/212	48/207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89	572,357	17,096	1,507,360	49,743	54,179	4,538	170개점 대상
서울	24	670,985	19,791	948,213	31,385	325,273	11,770	21개점 대상
부산	11	531,563	13,389	844,443	20,465	372,979	7,935	11개점 대상
대구	11	431,292	12,958	570,954	20,938	281,463	7,595	10개점 대상
인천	12	698,716	23,269	1,507,360	49,743	500,874	14,973	11개점 대상
광주	9	599,437	16,223	831,783	22,982	400,326	11,541	9개점 대상

대전	6	501,846	13,541	606,910	16,746	424,961	10,115	5개점 대상
울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53	642,721	19,447	1,052,672	37,656	304,485	6,959	49개점 대상
강원	6	849,343	25,538	914,232	28,604	784,454	23,387	2개점 대상
충북	7	497,272	19,126	624,128	24,490	352,316	15,990	5개점 대상
충남	11	528,904	14,735	710,133	22,371	287,780	6,735	10개점 대상
전북	6	507,399	16,059	643,423	32,171	300,756	8,340	5개점 대상
전남	4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17	369,713	10,653	558,786	15,501	184,996	4,625	16개점 대상
경남	8	551,381	16,891	733,996	25,532	346,922	11,081	8개점 대상
제주	0	해당없음						5곳 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바로 전 사업연도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89개	89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4년의 가맹사업 관련 광고 및 판촉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광고 및 판촉비를 기재하였습니다.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 관련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3,427,710	13,427,710	-	
광고	기타	연중	7,432,886	7,432,886	-	
판촉	기타	연중	5,994,824	5,994,824	-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2024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광고 및 판촉비는 1,955,768천원입니다.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 지점	서울 중구 명동길 43 신한은행	02-754-7474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신세계푸드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85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후 미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등의 부여에 대한 대가	소멸되는 금원
교육비	3,85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850
가맹비	11,000
교육비	3,85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5,000

○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49.6㎡ (15평기준)	92.6㎡ (28평기준)	49.6㎡ (15평기준)	92.6㎡ (28평기준)			
총계		122,779~ 135,057	161,629~ 177,792					
인테리어	협력업체	41,300~ 45,430	68,200~ 75,020	2,753~ 3,028	2,435~ 2,679	계약 또는 물품 입고 시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1면 (5m/15평, 8m/28평기준, 2면 이상 추가 비용 발생
가구	가맹본부	8,100~ 8,910	11,000~ 12,100					이동/고정식 가구
간판 (사인)	가맹본부	4,500~ 4,950	6,600~ 7,260					1면 (5m/15평, 8m/28평기준, 2면 이상 추가 비용 발생
설비/ 장비	가맹본부	51,000~ 56,100	57,400~ 63,140					제작/기성 주방장비
전산 장비	가맹본부	11,279~ 12,407	11,279~ 12,407					POS1대, KIOSK 1대, 옥외형/내부 DID 각 1대 등
초도 물품	가맹본부	6,600~ 7,260	7,150~ 7,865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설계에 대한 대가로 디자인설계매뉴얼비 일금삼백삼십만원(₩3,30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어닝, 외부닥트, 외부공사, 상하수도유입공사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순매출액의 4.4%	지정일	없음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용료	가맹본부	월 38.5	익월 1일 (또는 매월 지정일)	없음		가맹계약서 제18조 제9항 참고
DID 사용료	가맹본부	월 27.5				
인터넷 회선 사용료	가맹본부	기본구성 월 99,000원	매월 지정일	없음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0항 참고
		별도구성 월 87,120원+초과요금				
후드필터 세척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참고	없음		
매트 세척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참고	없음		
NBB 전용음원 사용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참고	없음		
홍보물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참고	없음		
거치대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참고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월 순매출액의 2.2%	지정일	없음		V.9.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디지털)	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판촉 내용 별 별도 공지	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파견 교육은 비용부담 협의
점포 운영 인력 지원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운영 기준에 의함	지원 요청 희망일 전일	없음		가맹계약서 제15조 제6항 참고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은 보관/배송을 위한 물류비 및 물품 공급을 위한 제반비용(금융비용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 점포, 원·부재료, 상품 및 근무자 등을 점검한 결과,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거나 매뉴얼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안전보건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가맹점 평균대비 높은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클레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 당사는 이를 계약의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에 위생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생기준 부합 등 검사를 위해 최소 수량의 원·부재료를 가맹점에서 수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

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규 계약기간 5년 내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가 이루어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신규 계약기간 5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비례한 가맹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비소멸성 가맹금에 한합니다.(계약이행보증금은 비소멸성 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비 및 교육비는 소멸성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당사의 영업의 양도 시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기간 5년이 경과된 후 가맹사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포괄적 영업양도양수를 승인받은 양수인은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도 포함한다) 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에 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계약의 종료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물품의 상태, 반품량, 유통기한, 반품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반품의 범위와 그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당사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받을 물품 및 상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당사가 위 표에서 정한 품목 외에 귀하에게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가맹계약서 별지5 운영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3397-6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사내 정보망을 이용하여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버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핫도그 전문점 포함)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별도 영업지역 확약서에 표시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가맹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m	

※ 철길 또는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 등 지형지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위 표의 설정 기준에 따라 정한 영업지역(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지역)과 가맹점사업자의 배달영업지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작성 → 가맹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여부 회신 통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80.8	19.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당사는 최초계약의 연장 이후 1년 6개월 단위로 가맹점의 점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인정되거나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사는 귀하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9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9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9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39조 3항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9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9조 3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6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4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4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7조 인테리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8조 설비시설 및 집기비품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19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0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2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3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4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5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6조 물품의 하자과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27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0조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1조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2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3조 영업비밀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4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5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7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계약서 제38조 영업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별지4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고의적 매출누락 및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누락에 대한 추가지불(상품대금 및 연체이자, 조사비용 등)이 지연되는 경우	40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건물이 수리나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손상, 파괴된 경우.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건물의 수리, 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0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0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0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0조 2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희망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직전 3개월간의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운영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직전 3개월간의 평균 로열티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와 계약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위에서 정한 계약해지 3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폐업한 경우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에서 정한 위약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가맹본부에게 발생되거나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손해배상,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을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2-3397-6000)

○ 귀하는 가맹점 개점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당사에게 양도양수 승인 요청을 할 수 있고, 당사는 개점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양도양수 승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한 영업정보(임차조건 등)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정보에 허위가 있을 시 양도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가족, 친인척 간 명의변경, 본인 소유의 법인과 개인 간 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도 양수인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을 양수인의 비용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해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동안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경업금지 예외
버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베이커리/샌드위치/핫도그 전문점 포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노브랜드 버거 개점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개설 전 당사 허가를 서면 승인받은 사업자

○ 귀하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식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별도 협의	연중무휴 또는 정해진 영업일	문의: 당사(02-3397-60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운영 매뉴얼 및 영업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부담액 제외한 금액	월 순매출액의 2.2%(부가세 포함)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진행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	-	-
판촉행사		행사의 성격 및 비용 규모를 감안해 상호 협의하여 정함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비용지급 시기는 별도 통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진행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진행하는 회원제서비스 및 제휴서비스(카드 등), 전자결제서비스(페이, 전자상품권 등 서비스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전자결제서비스 포함), 할인제도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비용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며, 할인율 및 부담 기준은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b>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제40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제41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맹계약서 제40조 계약의 해지

-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희망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직전 3개월간의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3개월 미만 운영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직전 3개월간의 평균 로열티 금액으로 정한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④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와 계약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전항에서 정한 계약해지 3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사전통보 없이 무단으로 폐업한 경우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제 3항에서 정한 위약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의 결과로 가맹본부에게 발생되거나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손해배상, 변호사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을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2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32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2~2(2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초기 인력지원	가맹점 오픈 시 7일간 가맹점 오픈 및 영업활동 등을 지원	가맹점 오픈 초기에 한해서 지원하며, 추가 지원 또는 가맹점 요청 시 별도 비용 청구	오픈일 전후 7일간	인력지원 (무상지원)	가맹본부 운영 기준에 의함

○ 위 표에서 정한 지원기간 이외에 추가로 당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가맹본부 마케팅 방법 등 경영 지도 2.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2-3397-60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가맹점에 대한 고객 불만 접수 시 개선 대책 및 운영 방안 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이론 교육, 조리 교육, 실습 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점 오픈 전 이수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년 1회 진행 (비정기적 진행)	필수 이수(교육 대상점포 선정)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노브랜드 버거(No Brand Burger)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1일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교육이수 필수인원 3명(가맹점사업자 포함 가능)
보수 교육	1일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가맹본부 부담	세부사항 별도 통지

○ 신규교육을 수료한 관리자(점장)가 퇴사 등의 사유로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즉시 해당 가맹점의 관리자(점장)를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점장)는 귀하의 비용으로 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NBB 홍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6-1 서교별관 1.5층
2	서울	NBB 중화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5-42
3	서울	NBB 코엑스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1층
4	서울	NBB 고속터미널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內
5	서울	NBB 신촌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72-14 케이스퀘어 빌딩 101호
6	서울	NBB 중계공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1 번지 씨앤미상가 101호 및 102호
7	서울	NBB 가산디지털단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5 1층 109호
8	서울	NBB 미아사거리역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2 동주빌딩 1층
9	서울	NBB 마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71-4 111호,112호
10	서울	NBB 을지로4가역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1층 102호
11	서울	NBB 양재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 107~109호
12	서울	NBB 서울시청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33-1
13	서울	NBB 잠실학원사거리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
14	서울	NBB 수유역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3 효성네오인텔리안 101호
15	서울	NBB 역삼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역삼동) 아주빌딩 1층
16	서울	NBB 문정역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층 109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17	부산	NBB 부산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3, 지하1 ~ 지상5층
18	인천	NBB SSG랜더스필드점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1루 매표소 2층
19	대전	NBB 대전시청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1, 신대림빌딩 1층
20	경기	NBB 원마운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1136~1138호
21	경기	광명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6-2 위더스빌딩 1층 101호
22	경기	NBB 일산라페스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9-2 1층 2층
23	경기	NBB 용인성복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6
24	경기	NBB 김포장기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5
25	경기	NBB 김포풍무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21-8
26	경기	NBB 스타필드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시리 5-6 스타필드 안성 1층 1336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4년 5개월(1,614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97,119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397-60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지 2

아래 품목 중 구입강제품목(물품사용, 거래상대방 모두 강제로 정한 품목)의 내역은 함께 제공받은 가맹 계약서의 구입강제품목 내역과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는 시점의 구입강제 품목 내역은 가맹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부재료 및 주방집기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설비/장비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전산장비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NBB전용음원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가구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가맹본부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제품명, 규격, 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 가맹계약서에서 공급하는 물품(원·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상기 물품 외에도 가맹본부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가맹본부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가구의 권장 품목을 가맹점주가 별도 구매 할 경우, 제공된 주방 설계사이에 맞게 구매, 설치의 책임은 구매자인 가맹점주에게 있다.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 2024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공급하는 품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판매하는 메뉴 및 메뉴별 판매가격 >

상품·용역명	권장 가격(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미트마니아	6,300		
미트마니아 세트	8,100		
트리플베이컨	6,300		
트리플베이컨 세트	8,100		
멕시칸칠리치즈	6,000		
멕시칸칠리치즈 세트	7,900		
NBB어메이징	5,800		
NBB어메이징 세트	7,700		
통마늘베이컨	5,500		
통마늘베이컨 세트	7,400		
더블치즈베이컨시그니처	5,500		
더블치즈베이컨시그니처 세트	7,400		
비스크치즈새우	5,400		
비스크치즈새우 세트	7,300		
메가바이트레드	5,000		
메가바이트레드 세트	6,900		
메가바이트	5,000		
메가바이트 세트	6,900	1회 위반: 구두 경고	
코울슬로치킨	4,900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코울슬로치킨 세트	6,800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NBB시그니처	4,800		
NBB시그니처 세트	6,600		
오리지널새우	4,700		
오리지널새우 세트	6,600		
더블그릴드불고기	4,400		
더블그릴드불고기 세트	6,400		
치폴레햇치킨	4,000		
치폴레햇치킨 세트	5,900		
NBB오리지널	3,900		
NBB오리지널 세트	5,800		
갈릭앤갈릭	3,700		
갈릭앤갈릭 세트	5,700		
베러불고기	3,200		
베러불고기 세트	5,200		
그릴드불고기	2,900		
그릴드불고기 세트	4,900		
허브순살치킨런	9,900		

허브순살치킨런	18,900		
상하이포크소	4,400		
상하이포크대	15,400		
슈가버터프라이	3,000		
칠리치즈프라이	3,900		
감자튀김M	1,900		
감자튀김L	2,500		
군고구마순살도나스	2,500		
크런치 왕(2pcs)	3,300		
크런치 왕(4pcs)	5,700		
크리스피너겟(3조각)	1,900		
크리스피너겟(5조각)	2,900		
어니언링	2,800		
인절미치즈볼(3)	3,000		
어묵깡	1,200		
크런치오징어(3pcs)	2,800		
치즈스틱(2pcs)	2,500		
브랜드바닐라아이스	2,700		
그린샐러드 미니	2,200		
그린샐러드	3,700		
그린샐러드 콤보	5,000		
치킨시저샐러드	4,900		
치킨시저샐러드 콤보	6,300		
닭가슴살샐러드	4,900		
닭가슴살샐러드 콤보	6,300		
닭가슴살앤두부샐러드빅	5,900		
닭가슴살앤두부샐러드빅 콤보	7,300		
펩시콜라	1,900		
펩시제로슈가	1,900		
사이다	1,900		
탐스제로오렌지	1,900		
브랜드콜라	1,900		
브랜드콜라제로	1,900		
브랜드사이다제로	1,900		
브랜드사이다제로	1,900		
아메리카노	2,500		
아이스아메리카노	2,900		
청귤라임에이드	3,300		
한라봉패션후르츠에이드	3,300		
오렌지주스	3,500		
생수	1,400		
그린티	2,500		
얼그레이티	2,500		
페퍼민트티	2,500		
캐모마일티	2,500		

